[별표 20]

발·변전소 주변압기 탭 정정 및 유효접지 검토절차

1.0 목적

별표3의 9에 의거 계통전압의 적정유지를 위하여 발·변전소 주변압기 탭 (NLTC,무부하 탭절환장치) 결정과 전력계통설비의 유효접지를 확보함으로써 1선 지락고장시 건전상의 전압상승을 억제하고 적정한 고장전류를 확보하기 위한 관련사업자와의 업무협조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는데 있다.

2.0 적용범위

- 2.1 관련 사업자: 전력거래소, 전기사업자(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)
- 2.2 적용업무
- 2.2.1 발전기 154kV 이상 주변압기 NLTC 탭 정정
- 2.2.2 변전소 345kV 이상 주변압기 NLTC 탭 정정
- 2.2.3 발전기 154kV 이상 주변압기 중성점 유효접지 검토
- 2.2.4 변전소 154kV 이상 주변압기 중성점 유효접지 검토

3.0 책임

- 3.1 전력거래소는 발·변전소 주변압기 탭 정정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 할 책임이 있다.
- 3.2 전기사업자는 탭 정정 필요시 또는 전력거래소 요청시 탭 검토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3.3 전력거래소는 발·변전소 주변압기 중성점 유효접지 검토업무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비할 책임이 있다.
- 3.4 전기사업자는 유효접지 검토 필요시 또는 전력거래소 요청시 유효접지 검 토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
4.0 참고자료

- 4.1 법
- 4.2 한전설계기준 (송전분야 1031)

5.0 용어의 정의

5.1 ULTC

Under Load Tap Changer 의 약자로 부하가 걸린 상태로 전압을 조정하는 변압기의 부속장치를 말한다.

- 5.2 전력용 콘덴서 송전계통의 중부하시 전압조정과 역율개선을 위해 설치한 무효전력 보상 장치의 일종을 말한다.
- 5.3 NLTC
 No Load Tap Changer의 약자로 무부하시 전력용 변압기의 변압비를 조정하기 위한 탭절환장치의 일종을 말한다.

6.0 지침 해당 없음

7.0 발·변전소 주변압기 탭정정 절차

- 7.1 발·변전소 주변압기 탭 검토 의뢰
- 7.1.1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는 변압기 사용 탭의 결정 또는 변경사유 발생 시 계통연결 예정 2개월 이전에 별지 제74호 서식에 의거 전력거래소에 검토 의뢰한다.
- 7.1.1.1 발전소 154kV 이상 변압기 신·증설·변경시
- 7.1.1.2 병렬로 운전되는 발전기간 무효전력 수급 불균형시
- 7.1.1.3 변전소 345kV 이상 주변압기(ULTC 제외) 신·증설·변경시
- 7.1.2 타 사업자와 연계되는 변압기 탭 정정은 상호협의 후 전력거래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7.2 발·변전소 주변압기 탭 검토
- 7.2.1 전력거래소에 제출한 검토의뢰 요청공문의 최초가압 예정 1개월 전까지 검토결과를 발·변전소 변압기 사용 탭 결정서 양식(별지 제75호서식)에 의거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다. <개정 2009.12.31>
- 7.2.2 발.변전소 주변압기 탭 정정 기준
- 7.2.2.1 발·변전소의 주변압기 탭은 상호 협조되도록 하여야 하며 발·변전소 전압 은 별표 3을 적용하되 가능한 전압변동이 적도록 한다.
- 7.2.2.2 무효전력이 많이 소요되는 중부하시에는 전력용 콘덴서의 이용율을 높이 도록 하다.
- 7.2.2.3 계통 일부의 전압개선이 타부분의 전압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.
- 7.2.2.4 타계통으로 절체시 전압변동이 적도록 한다.
- 7.2.3 기타 전력거래소는 계통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사업자의 요청이 없어도 발·변전소 탭을 검토하여 변경·요청할 수 있다.
- 7.3 발·변전소 주변압기 탭 정정 시행
- 7.3.1 정정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변압기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탭 접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소에 통보한다. 단, 운전중

탭절환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력거래소와 협의후 탭 변경일자를 통보한다.

8.0 유효접지 검토절차

- 8.1 발·변전소 주변압기 중성점 유효접지 검토 의뢰
- 8.1.1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는 주변압기 중성점 유효접지 검토 또는 변경 사유 발생시 별지 제76조 서식에 의거 계통연결 예정 2개월 전에 전력거 래소에 검토를 의뢰한다.
- 8.1.1.1 발전소 154kV 이상 주변압기 신·증설 변경시
- 8.1.1.2 변전소 154kV 이상 주변압기 신·증설 변경시
- 8.2 발·변전소 주변압기 중성점 유효접지 검토
- 8.2.1 검토기준
- 8.2.1.1 1선지락고장 조건하에서는 어느 점에서든지 영상 Impedance대 정상 Impedance의 비는 다음의 범위내에 유지토록 한다.

 $R0/X1 \leq 1$ and $X0/X1 \leq 3$

R0: 영상저항

X0: 영상임피던스

X1: 정상임피던스

- 8.2.1.2 중성점 접지는 전체계통이 유효접지권내에 유지되도록 각 발전소에 최대 용량의 한 Bank이상을 선택하고 만약BIL의 제약 또는 계전기 동작에 충 분한 고장전류를 공급할 수 없는 발변전소에서는 필요한 변압기를 모두 접지할 수 있다.
- 8.2.1.3 (3상 단락전류 × 60%) ≤ 1선 지락전류
- 8.2.1.4 비접지 중성점의 전위상승 ≤ (상전압 × 85%)
- 8.3 검토결과통보
- 8.3.1 전력거래소는 공문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발·변전소 주변압기 중성점 유효접지 검토 결과를 별지 제77호 서식에 의거 해당 사업자에 통보한다.
- 8.3.2 상기 검토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용하고 주변압기 중성점 접지 개소 변동이 가능한 적도록 한다.
- 8.3.3 주변압기 중성점 접지개소가 휴전 등의 사유로 정지시에는 타 변압기의 추가접지 등 별도의 임시조치를 취한다.
- 8.3.4 기타 계통운영상 필요시 상기 처리사항에 대해 유효접지 검토,시행한다.
- 8.4 발·변전소 주변압기 중성점 유효접지 시행
- 8.4.1 유효접지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주변압기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, 그 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력거래 소에 통보한다.

- 9.0 붙임
- 9.1 발·변전소 변압기 탭 정정 업무 흐름도
- 9.2 전력계통 유효접지 검토 업무 흐름도

발·변전소 변압기 탭 정정 업무 흐름도

| 업 무 절 차 | 업무 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기사업자 | ○ 주변압기 탭 검토 의뢰 | ○ 계통연결 예정 2개월 이전에 154kV 이상 발전소 주변압기 탭 검토의뢰 |
| ▼ 전기사업자 | ○ 탭 검토 | ○ 검토요청 사업자에게 최초가압 예정 1개 월 전까지 통보<개 정 2009.12.31> |
| 전기사업자 | ○ 탭 정정 시행 | ○ 탭 정정후 1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소 검토부서에 결과 통보 |

전력계통 유효접지 검토 업무

| 업 무 절 차 | 업 무 내 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기사업자 | ○ 전력계통 유효접지 검토 의뢰 | ○ 계통연결 예정 2개 월 이전에 154kV 이상 발,변전소 주변압기 유효접지 검토의뢰 |
| ▼ 전기사업자 | ○ 전력계통 유효접지 검토 | ○ 검토요청 사업자에 공문접수후 1개월 이내에 통보 |
| 전기사업자 | ○ 주변압기 중성점 유효접지 검토결과 시행 | ○ 주변압기 중성점 유효접지 시행후 1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소 검토 부서에 결과 통보 |